터키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터키 공화국(Republic of Turkey)
2. 수도 : 앙카라(Ankara, 566만명)
3. 인구・면적 : 8,532만명(2021년), 783,562㎢(한반도의 약 3.5배)
4. 공용어 : 터키어(한국어와 같은 알타이어계)
5. 1인당 GDP : 9,327달러(2021년)
6. 독립일 : 1923. 10. 29.(터키 공화국 선포일, 오스만제국 계승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대통령중심제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○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urkey

2. 연혁

○ 1962. 1961년 헌법 개정과 1962년 헌법재판소조직과 소송법 입법으로 헌법재판소 설립
– 독일 및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제도 수용

○ 1982.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등 일부 수정

○ 2010. 9. 12.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관의 수 및 선출절차 등 변경, 헌법소원제도 도입

○ 2017. 4. 16.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대(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)

3. 구성(헌법 제146조)

○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 2인을 포함한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

○ 재판관 중 3인은 국가회계법원과 변호사협회의 대표들에 의하여 추천된 자(공

석당 3배수) 중에서 국회가 선출

○ 재판관 중 12인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짐
  – 파기법원 법관 중에서 3인, 최고행정법원 법관 중에서 2인을 임명하는데, 해당법원의 재판부전원회의에서 3배수로 지명된 법관 중에서 임명
  –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법학·경제학·정치학 분야의 교원 후보자(공석당 3배수) 중에서 3인 임명(이 중 최소 2명은 법학전공자여야 함)
  – 나머지 4인은 고위공무원, 개업 변호사, 선임 판사·검사 또는 헌법재판소 경력이 5년 이상인 헌법연구관 중에서 임명

○ 재판관은 45세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
  – 정교수 혹은 부교수
  – 고등교육기관을 졸업(학사학위 소지)하고 2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한 고위공무원
  –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변호사
  –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임 판사와 검사

○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고 재임 및 겸임 불가. 정년은 65세

○ 헌법재판소장 및 2명의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4년의 임기로(중임 가능) 재판관 전원에 의한 다수결로 선출

4. 권한(헌법 제148조, 제149조, 헌법재판소법 제3조)

○ 규범통제

① 추상적 규범통제
  – 법률,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, 국회의사규칙의 형식 및 내용의 위헌 여부 심판
  – 헌법 개정의 형식상 하자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(내용에 대한 심사는 불가능하고 필요한 제안・표결・논의절차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)
  – 대통령 또는 국회의 양대 다수 정당 혹은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에 의해서만 신청 가능(헌법 제150조)
  – 국가긴급사태, 계엄령 혹은 전시 중에 발효된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에 대한 위헌심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(헌법 제148조)

- 국제조약은 규범통제의 대상에서 제외(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)

② 구체적 규범통제

-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및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되거나 일방 당사자의 위헌 주장이 상당한 경우 위헌법령심판을 제청(헌법 제152조, 헌법재판소법 제40조)

○ 헌법소원심판

-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 또는 유럽인권협약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(다만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해야 함)

○ 대통령, 각료, 국회의장,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, 각 고등법원의 법원장 및 법관, 검사장 및 검사장보, 검사, 감사법원, 터키 국군 총 사령관, 육해군 총 사령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법행위에 대한 심판(최고 형사재판소로서의 역할)

○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의 재정에 대한 감사(헌법 제69조)

○ 헌법이나 국회의사규칙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박탈 및 제명결정

5. 심리 및 결정(헌법 제149조, 제153조 등)

○ 헌법재판소에는 전원재판부(plenary), 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중재판부(section), 재판관 2인으로 구성되며 각 중재판부 아래에 설치된 소재판부(committees)가 있음

○ 전원재판부는 소장(소장이 없을 경우 소장이 임명한 부소장)의 주재하에 10인 이상의 재판관 참석으로 개최되며, 위헌법률심판, 정당해산심판,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위법행위 심판, 정당의 재정 감사를 담당

○ 중재판부는 부소장의 주재하에 4인 이상의 재판관 참석으로 개최되며, 헌법소원 본안을 심사함

○ 소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며, 재판관 2인의 만장일치로 결정함

○ 결정은 다수결이 원칙이나, 헌법 개정의 형식상 하자에 대한 위헌 결정, 정당해산 및 정당에 대한 재정지원 금지 결정의 경우 참석 재판관 3분의 2 이상

의 찬성으로 결정

- ❍ 법률,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(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4항)
- ❍ 법률,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, 국회의사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, 그 결정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(소급효 없음). 다만, 필요한 경우 관보공고일로부터 1년을 지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 상실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음
- ❍ 헌법재판소 판결은 최종적
- ❍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를 기속(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)

6. 기타사항

- ❍ 보고서 작성과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의 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연구관과 연구관보를 둠(헌법재판소법 제24조)
  - 연구관은 적어도 5년의 경력이 있는 교수, 판사, 감사관 등으로 이루어짐.

7. 연락처

- ❍ 주소 : Ahlatlıbel Mahallesi İncek Şehit Savcı Mehmet Selim
  Kiraz Bulvarı No : 4
  06805 Çankaya / ANKARA / Turkey
- ❍ 전화번호 : +90 312 463 73 00
- ❍ 팩스번호 : +90 312 463 74 00
- ❍ 홈페이지 : http://www.anayasa.gov.tr

※ 출처 : 터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
터키 헌법
터키 헌법재판소법

(2021. 8. 작성)